

급여이용 정보제공

봄날주간보호센터

1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봄날주간보호센터	정원(명)	현원(명)
	30	25

2. 시설개요

- 1) 대표자 : 강래영
- 2) 소재지 :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27, 7층
- 3) 설립일 : 2021년 6월 11일
- 4) 전화번호 : 042-633-3588
- 5) 팩스번호 : 042-634-3588
- 6) 홈페이지 주소 : <https://blog.naver.com/bomnal3588>

3.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등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주간보호는 1-6등급으로 한다.

2) <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30명으로 한다.

3) <모집방법>

본 시설은 각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 ①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를 통해 각 사업별 이용자를 모집
-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를 통한 모집
-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게시, 주보 등을 통한 모집
-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홍보물에 게재함으로써 대상자 모집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신분증사본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저녁식대 별도>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식비 1식당 3,600원 / 간식비 500원)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그 비용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등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서비스

② 제1항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규정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 ④ 이용자 개인적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보호하여야 함
- ⑤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게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2) <면책>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 구속지침에 의한다.

2.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 3.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5.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의료급여의 제공>

- ① 시설은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물 등의 사용>

-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직원 사항

[2026년 2월 1일 기준]

번호	이름	직위	업무내용
1	강수아	센터장	센터업무 총괄 및 어르신케어 총괄
2	배현일	부센터장	행정 업무 총괄
3	황혜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업무 (프로그램, 행정)
4	최선숙	간호조무사	간호업무 및 케어업무보조
5	김가민	팀장(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업무 총괄
6	연상민, 최선미 김명숙, 최인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업무
7	김미정	운전원	운전업무

2. 직원 근무 현황 (주, 야간 근무자 현황)

※ 근무표 대체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노인주간보호센터
- 장기요양등급 1~6등급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재가급여 (1일 8시간 수가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요 양 급 여	노인주간보호센터 수가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본인부담금 (일반 15%)	10,460	9,689	8,946	8,702	8,454	8,454
	본인부담금 (경감 9%)	5,796	5,369	4,957	4,822	4,685	4,685
	본인부담금 (경감 6%)	3,864	3,580	3,305	3,215	3,121	3,121
	본인부담금 (기초수급 0%)	0	0	0	0	0	0
비 급 여	식재료비(1식)	3,600원(일반)					
	간식비(1회)	500					
	이/미용료등	없음					

5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구 분 시설별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이용자 수 (30명)	○	○		○		○		○	
면적	206.1	13.28		6.77		12.94		19.37	

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KB손해보험
- 보장기간 : 2024년 5월 31일부터 2039년 5월 31일까지
- 가입인원 : 30명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KB손해보험
- 보장기간 : 2024년 5월 31일부터 2039년 5월 31일까지